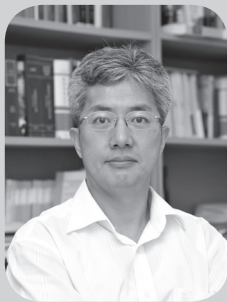


이달의 칼럼



이창현

-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변호사(형사법)
- 주요 저서
 - 형사소송법(제7판)
 - 사례 형사소송법(제4판)
 - 형사소송법 핵심판례 110선(공저)
 - 형법판례 150선(공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변호사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다보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2가지이다. 첫째, 현행 법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면서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유일하게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나, 출산이나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고려하여 응시기간 5년 이내라는 제한을 없애고 그냥 5회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5년 이내에 5회만'의 응시기회로 더 이상 응시할 수 없게 된 분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으며, 더구나 5회까지 응시하여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앞으로도 평생 응시금지가 되어 사회의 낙오자로 남게 되므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둘째, 기본과목 외에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선택과목까지 변호사시험 과목

에 포함하고 있으나 로스쿨에서 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에 시험과목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택과목들 사이에는 학습량과 난이도 조절이 어려워 특정과목으로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한 로스쿨제도의 설립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지만 '시험이 아닌 이수'로 대체하는 경우에 개별 로스쿨에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기도 하다.

위 개정안이 10월 7일 발의되어 과연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조만간에 시행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난해에 발의되어 국회의결까지 가능했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손쉽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선택형시험 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기존 로스쿨 외에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은 지난해와 올해 초에 발의가 되었으나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의결된다고 하여 로스쿨교육과 변호사시험의 문제점이 해결된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9수까지 하여 사시에 합격한 분이 검찰총장도 되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데도 5회 시험에 불합격하였다고 평생 더 이상의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적정선에서 유지하는 역할 외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응시 제한은 하루빨리 철폐해야 하며 3년 동안의 짧은 공부로 법학이론과 실무까지 모두 완벽하게 갖출 것이라는 망상을 버리고,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개정안의 국회의결이라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적지 않은 국민들의 염원을 생각해서라도 국회의원들은 발의만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좋은 힘'을 발휘하여 개정안의 완성품을 조속히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출처/법률신문)